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

1. ① 신청인: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(세대원 전체 기준)을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)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(예시) 납세의무자(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) + 납세의무자(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) = 1세대1주택 신청 가능

납세의무자(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) + 배우자(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) = 1세대1주택 신청 불가

2. ② 신청유형: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"최초", 최초 신청 후 지분율이 변경되거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"변경",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"1세대1주택 특례 취소"의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3. ③ 보유지분: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.

4. ④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: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만 표시하며,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.

(예시 1) 지분이 같은 경우

구 분	보 유 지 분	납세의무자 지정 신청
본 인	50%	[√]
배 우 자	50%	[]

-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

(예시 2) 지분이 다른 경우

구 분	보 유 지 분	납세의무자 지정 신청
본 인	60%	※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.
배 우 자	40%	

5. ⑤공동명의 주택 소재지: 공동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